

인지세 납부 안내

인지세법 제1조,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에 따라 부동산 분양계약 체결 시 인지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. 따라서, 계약체결 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첨부하여야 하며, 미납부 또는 수입인지 분실 시에는 기간에 따라 본 세액의 최대 300%까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 인지세 납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인지 구입 후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 주십시오.

■ 인지세 과세대상 및 납부기한

과세대상	납부기한	기재금액	비고
부동산 분양계약서	계약체결일	분양대금(총 공급대금)	매수인 보관용 계약서에 첨부

※ 매수인 보관용 계약서에 첨부
 ※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“전자수입인지”를 구입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.

■ 세액

기재금액	세액
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	20,000원
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	40,000원
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	70,000원
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	150,000원
10억원 초과	350,000원

■ 가산세 : 기간별 최대 300% 부과(관련법령 : 국세기본법 제47조4제9항, '21.1.1부터 적용)

기간	납부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	3개월 초과 6개월 이내	6개월 초과
가산세	무(과소)납부 세액의 100%	무(과소)납부 세액의 200%	무(과소)납부 세액의 300%

■ 전자수입인지 구입처 : 전자수입인지 사이트(e-revenuestamp.or.kr), 우체국, 은행

구분	온라인	오프라인
구입처	전자수입인지 사이트 (http://www.e-revenuestamp.or.kr/)	우체국, 은행
구입방법	①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접속 ② “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”클릭 ③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 ④ “구매”클릭 후 납부정보 입력 - 용도 : 인지세 납부 - 과세문서 종류 : 부동산 등 소유권이전 - 금액 : 계약서 기재금액에 따른 해당세액 입력 - 매수 : 1매 ⑤ 결제(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) ⑥ 출력 ⑦ 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	① 인근 우체국 또는 은행 방문 ② 전자수입인지 구매신청서 작성 - 용도 : 인지세 납부 - 금액 : 계약서 기재금액에 따른 해당세액 입력 - 매수 : 1매 - 성명/주민등록번호/연락처 기재 ③ 결제(현금납부만 가능) ④ 전자수입인지 발급 ⑤ 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

- 계약체결 시 인지세가 납부됨에 따라 **소유권이전등기 시에 별도로 인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.**
- 전자수입인지는 **종이문서용**으로 구입하여야하며,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지 않고 계약 당사자간에 인지세를 현금으로 인계하는 것은 납세의무 미이행으로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.
- 수입인지는 등기 시 필수 제출서류로, 인지세를 납부하셨더라도 수입인지를 분실할 경우 미납으로 간주되오니 **계약서의 첨부서류로 함께 보관하여 주시고 분실되지 않도록 유의**해주시기 바랍니다.